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20610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나206104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합52033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태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김종필

변론 종결2024. 10. 23.

판결 선고2024. 11. 2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합520337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6,290,000원 및 그중 1,650,000,000원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686,29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440,000,000원에 대하여 2021. 8.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9,44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부터 2023. 11.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 "따라서"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도급계약 성립을 전제로 지급한 선급금 및 기성금 합계 2,776,290,000원(= 2021. 5. 26.자 선급금 1,650,000,000원 + 2021. 7. 1.자 기성금 686,290,000원 + 2021. 8. 5.자 기성금 4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계약을 승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설계도서 확정 이후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제출한 2021. 8. 25.자 견적서(갑

제10호증)에 따른 토목공사를 전부 완료한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081,061,487원(= 2021. 8. 25.자 견적서상 견적금액 3,448,261,487원 - 원고가 D에게 지급한 금액 2,367,20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총 2,776,29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액 1,695,228,513원(= 2,776,290,000원 - 1,081,061,487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또한"부터 제5행 "불과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또한 피고는 D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합계 2,660,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은 115,390,000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2,776,290,000원 - 피고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2,660,900,000원)에 불과하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약정해제권"을 "약정해지권"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6행 "이때"부터 제8행 "어렵다."까지를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잔여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②-1 피고는 2021. 5. 27.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1,970,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23호증), 위 공사대금에 원고가 토목공사의 일부를 진행한 D에 지급한 공사대금 2,367,200,000원을 더하면 4,337,200,000원이 된다. 이는 위 F가 증언한 최종 토목공사 추정대금의 범위 및 D가 수행하였던 공사 기성률이 절반 정도라는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의 2021. 8. 25.자 견적서에 따른 최종 견적금액은 3,448,261,487원으로 위 4,337,200,000원보다 훨씬 작는데, 이 사건 계약에 D의 기존 공사 부분이 포함되었다면 최종 견적금액도 더 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③-1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게 한 1회 기성금 청구에 첨부된 '공종별 집계표'에 토목공사 내역 합계액이 3,184,510,936원, 전회 기성 합계액이 1,606,899,72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8호증), 원고는 이를 D의 기존 기성을 피고의 공사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가 D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든다. 그러나 위 1,606,899,720원은 D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2,367,200,0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위 1회 기성금 청구 내용에서 누계 기성률은 21.24%인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선금금으로 지급한 전회 누계액 1,500,000,000원과 금회 신청액 623,900,000원의 합계인 누계 기성액 2,123,900,000원에 근거하고 있을 뿐, D에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 '공종별 집계표' 토목공사 내역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D의 공사 부분을 기성으로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① 원고가 도급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종료의 효과가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일 감리단에 인력투입 및 장비현황이 기재된 공사일보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감리회사가 건축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 현황을 확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D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D에 지급한 금액인 2,367,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액이 115,390,000원보다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D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에 지급한 위 2,367,200,000원을 반영하여 피고의 반환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배용준

판사견종철

판사최현중